

대전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나125175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14.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0. 27. 선고 2019가소2429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 C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 피고를 선임하여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이와 별개로 원고가 2015. 9. 10.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가 원고를 위해 위 형사사건에 보석신청을 하되, 보석신청이 기각되면 피고가 위 1,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보석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서울남부지방법원 C 사기 사건의 보석신청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에 기하여 2015. 9. 10.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수임계약에 따른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던 점, ② 위 위임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석신청이 기각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조건부 계약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③ 이 사건 소는 위 보석신청 기각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야 제기되었는데, 그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돌려달라거나 이익을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1,000만 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급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매경, 판사 이정호, 판사 신옥영